##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진성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984

발의연월일: 2024. 10. 29.

발 의 자:진성준·김태년·안도걸

김주영 • 박홍근 • 최기상

임광현 · 정태호 · 김영환

한정애 · 신영대 · 추미애

의원(12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인적용역의 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(일반적으로 용역의 수요자)가 100분의 3의 세율을 적용하여 인적용역제공자 등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대신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,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제공자가 부담한 원천징수세액이 종합소득 신고로 확정된 최종 세액보다 많아 '22년, '23년 2년 동안에만 인적용역 소득자 약 618만 명에게 소득세 환급금 1조 5천억원 가량이 환급되었음('22년 269만명, 6,515억원 / '23년 349만명, 8,502억원).

그런데 과세관청은 정부의 세수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환급금의 환급을 위해 불필요한 행정력을 동원해야 하고, 환급 시스템 개발 등으로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 국세행정의 비효율과 국가재 정의 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음. 아울러 납세자는 세금 환급을 받기 위해 환급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음.

이에 납세자가 환급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과세관청이 신속하게 환급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80조제1항 후단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0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제127조제1항제3호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직전 과세기간 및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) 제80조제1항 후단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0조(결정과 경정) ① 납세지	제80조(결정과 경정) ①
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	
청장은 제70조, 제70조의2, 제7	
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	
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	
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	
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	
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	
다. <u>&lt;후단 신설&gt;</u>	이 경우 「제127조제1항제3호
	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
	있는 자로서 직전 과세기간 및
	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
	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	금액에 미달하는 자가 과세표
	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
	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종
	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하
	<u>여야 한다.</u>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